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48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영유아의 발달상태 평가, 감염성질환 및 일반질환 관리, 교직원 대상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건강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대상 사업이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9조의4(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신설), 제22조(비용의 보조)에 의한 사무로서,
-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에 의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5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 후,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신규사무)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 나. 위탁내용 :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일체
- 위탁사무 내용
 - 영유아 건강관리

- 영유아 신체계측 및 건강사정
- 영유아 발달단계 평가 및 전문기관 의뢰
- 전염성 질환과 일반질환 발견 및 전문기관 의뢰
- 영유아 대상 질병예방 교육
- **보육교직원 대상 보건교육**
 - 구급함 구비 및 사용법 교육
 - 응급상황(고열, 호흡곤란, 낙상, 화상 등) 대처법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 **보호자와 원아의 건강상태 공유(가정통신문) 및 상담**
 - 가정통신문 발송 및 건강상담, 전문 의뢰기관 안내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정통신문 번역(영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 등)
- **기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 방문대상 : 정원 40인** 이하 서울시 어린이집 1,500개소
- 방문주기 : 월 1회
- ※ ① *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간호사를 1명 배치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 ② **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40인 이하로 한정
- ③ '12년~'21년까지 일반용역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함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①항3호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9조의4(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②항

라. 위탁유형 : 사무형(신규)

마. 민간위탁 필요성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지원은 영유아의 발달상태 평가, 감염성질환 및 일반질환 관리, 교직원 대상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의학적인 전문지식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임
-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연중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함

바. 위탁기간 : 2022. 7. ~ 2024. 12. 31.(2년 6개월)

사. 소요예산 : 775,837천원(인건비 626,047천원, 사업비 149,790천원 등)

- 1,500개 어린이집 대상, 6개월 사업비
- 총괄책임자, 방문간호사(37명), 교육간호사 등 총 41명
- ※ 방문간호사 37명×어린이집 40.5개소(월)=1,500개소

아.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영유아 건강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간호사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항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 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 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안내 및 건강검진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9조의4(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22.2월 신설, 3월 공포)

제22조(비용의 보조) 13. 그 밖에 시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드는 비용

나. 예산조치 : 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추경 예정(예산담당관 협의 완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일반용역 단년도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2.1.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을 행정사무로 볼수 있는지 법률자문 완료

- 2022.1. : 민간위탁추진 사업계획 수립

- 2022.2.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 향후계획

- 2022.3. : 시의회 동의 및 추경 확보

- 2022.7. : 민간위탁 사업 추진

※ 작성자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이복남 (☎ 2133-7577)